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재외공관에 주말레이시아대한민국대사관코타키나발루분관 신설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9등급 1명, 3등급 또는 4등급 1명), 재외국민 보호 및 사할린동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8명(3등급 또는 4등급 8명), 경찰분야 주재관 인력 2명(경감 2명)을 증원하고 통일·안보분야 주재관 인력 1명의 직급을 4급에서 3급 또는 4급으로 상향하는 한편,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감사관 1개 담당관, 재외동포영사실 1개 센터의 평가기간을 그 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각각 1년 연장하고, 신규로 증원되는 인력 중 공관 사건·사고 대응을 전담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22. 2. .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된 정원 3명(6급 1명, 3등급·4등급 2명)을 감원하고 일부 부서의 업무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8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0호(중전의 제9호) 중 “제8호”를 “제9호”로 한다.

9. 경제안보외교센터의 운영

제34조제1항 단서 중 “7명(행정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 또는 3등급·4등급 영사직공무원 1명, 3등급·4등급 영사직공무원 또는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1명, 3등급 또는 4등급 영사직공무원 2명, 3등급·4등급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또는 전산주사보 3명)”을 “5명(3등급·4등급 영사직공무원 또는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1명, 3등급 또는 4등급 영사직공무원 2명, 3등급·4등급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또는 전산주사보 2명)”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단서 중 “같으며, 별표 2의2의 정원 중 1명(3등급·4등급 영사직공무원 또는 행정주사보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를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266명”을 “281명”으로, “106명”을 “121명”으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978”을 “976”으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974”를 “972”로 하며, 일반직 계 “239”를 “238”로 하

고, 행정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 또는 3등급·4등급 영사직공무원 “8”을 “7”로 하며, 외무공무원 계 “727”을 “726”으로 하고, 3등급·4등급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또는 전산주사보 “11”을 “10”으로 한다.

별표 2의2 중 총계 “110”을 “109”로 하고, 외무공무원 계 “40”을 “39”로 하며, 3등급·4등급 영사직공무원 또는 행정주사보 “9”를 “8”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및 외무공무원 계 “1,432”를 각각 “1,442”로 하고, 9등급 외무공무원 “124”를 “125”로 하며, 3등급 또는 4등급 영사직공무원 “245”를 “254”로 한다.

별표 3의2를 신설한다.

별표 5 제1호1)의 평가기간란 및 같은 호 2)의 평가기간란 중 “2022년 3월 31일”을 각각 “2023년 3월 31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관 사건사고 전담 업무 (대한민국재외공관)	7명 (3등급 또는 4등급 7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정원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재외공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3에도 불구하고 2022년 3월 31일까지는 별표 3의2를 적용한다.

[별표 3의2]

대한민국재외공관 공무원 정원표(부칙 제2조 관련)

총계	1,434
외무공무원 계	1,434
14등급 외무공무원	1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222
13등급 외무공무원	2
12등급 외무공무원	4
11등급 외무공무원	7
10등급 외무공무원	17
9등급 외무공무원	125
8등급 외무공무원	165
7등급 외무공무원	44
5등급 또는 6등급 외교통상직공무원	208
5등급·6등급 외교통상직공무원 또는 영사직공무원	273
5등급·6등급 영사직공무원 또는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19
5등급 또는 6등급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35
3등급 또는 4등급 영사직공무원	246
3등급·4등급 영사직공무원 또는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35
3등급 또는 4등급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19

신 · 구조문대비표

[illegible]

무원 1명, 3등급 · 4등급 영사직 공무원 또는 외교정보기술직 공무원 1명, 3등급 또는 4등급 영사직공무원 2명, 3등급 · 4등급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또는 전 산주사보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 ③ (생략)

제35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립외교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으며, 별표 2의2의 정원 중 1명(3등급 · 4등급 영사직공무원 또는 행정주사보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 ④ (생략)

⑤ 공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66명(9등급 24명, 8등급 31명, 7등급 9명, 5등급 · 6등급 96명, 3등급 · 4등급 106명)은 임

----- 2명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5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같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 281명 -----

----- 121명 -----

기제외무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 ---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의2]

외교부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978</u>	<u>976</u>	-2
1 .			
공무원(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u>974</u>	<u>972</u>	-2
·	·	·	
·	·	·	
일반직 계	<u>239</u>	<u>238</u>	-1
·	·	·	
·	·	·	
행정주사 · 시설주사 · 공업주사 또는 3등급 · 4등급 영사직공무원	<u>8</u>	<u>7</u>	-1
·	·	·	
·	·	·	
외무공무원 계	<u>727</u>	<u>726</u>	-1
·	·	·	
·	·	·	

3 등 급 · 4 등 급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또는 전산주사보	<u>11</u>	<u>10</u>	-1
·	·	·	
·	·	·	

[별표 2의2]

국립외교원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u>110</u>	• <u>109</u>	-1
•	•	•	
•	•	•	
외무공무원 계	<u>40</u>	<u>39</u>	-1
•	•	•	
•	•	•	
3 등 급 • 4 등 급	<u>9</u>	<u>8</u>	-1
영사직공무원 또는 행정주사보			
•	•	•	
•	•	•	

[별표 3]

대한민국재외공관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2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		.		
			<u>1,432</u>		<u>1,442</u>	+10	
외무공무원	계		<u>1,432</u>		<u>1,442</u>	+10	
	.		.		.		
	.		.		.		
9등급	외무공무원		<u>124</u>		<u>125</u>	+1	
	.		.		.		
	.		.		.		
3등급	또는	4등급					
영사직공무원			<u>245</u>		<u>254</u>	+9	
	.		.		.		
	.		.		.		